

부록

1_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해외사례

1) 프랑스 임대차보호법 사례

프랑스의 경우 임대차를 주거용, 상업용, 상업 이외의 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입법하고 있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는 민법 및 특별 입법에 의해 '영업재산(propriete commerciale, 혹은 상업소유권)'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이는 무형·유형 자산으로 구분한다. 무형 자산은 상호, 간판, 고객, 임차권 등을 지칭하며 유형 자산은 설비, 상품 등을 포함한다. 고객 및 임차권으로 강조되는 무형 자산은 우리나라의 권리금, 일본의 영업권(のれん権⁵¹⁾), 영국의 굿윌(good-will)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국내의 권리금 개념과 유사하다. 영업재산은 고객에 대한 권리이며 이는 동산으로 분류되며, 부동산에 해당하는 상점공간에 대한 권리와 구분된다. 국내에서 토지와 건물의 관계로 견줄 수 있으나, 상가임대차와 영업재산임대차(통상 '관리임대차'로 부르기도 한다)가 별도의 계약관계로 성립된다.

임대차 기간 및 계약의 해지

임대차 기간은 9년 이상의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965년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인의 영업활동 안정, 권리금과의 균형 등을 위한 최저시간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다. 영업재산은 재산적 가치표현에 자유가 있어, 영업재산과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보할 수 있도록 보호되고 있다. 임대차 만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영업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다. 프랑스의 임차상인들은 대부분이 영세한 상인들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가 국내와 상이할 수 있다.

51) のれん(포렴)은 상점 앞에 늘인 천조각으로 '상점의 신용'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점포로서의 무형의 이익'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のれん権은 무형 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의 일종으로 해석된다. (<http://www.k3.dion.ne.jp/~afujico/swk120204.htm>)

3년 기간 종료 시 최소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해지신청 권리를 임차인이 지닌다. 해지는 형식적으로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임차인을 위해 최소해지권을 일정 조건하에 부여하거나 최초 3년을 초과해도 허용 가능하다. 3년 경과 후에는 건축 등의 이유로 퇴거 요구 시에는 일정 손해보상을 조건으로 해지권을 지닌다. 신축, 철거, 개보수 등은 공실상태가 되어야 한다. 임차인이 해지를 통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존고객에 대한 가치평가, 감소된 매출 추정량, 동가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건물 등을 포함하며, 지난 3년간의 결산 자료 등을 참고로 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동일한 가치의 임대목적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임대인이 1년의 통지기간을 거쳐 동일 가치의 상가공간을 제공하고 임대 손실을 보상한다면 3년 이내라도 건축 또는 대수선을 위해 해지할 수 있다. 계약침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상대방이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침해는 상점이 합의했던 계약상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거나, 상점이 속한 건물이 상점의 이용과 대치하는 경우, 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임대료 연체가 반복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일정기간 영업을 지속한 경우, 약정 만료 6개월 전에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은 3개월 내에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 임차인은 갱신이 라는 이익이 부여되고 해지통고 또는 갱신거절이 아닌 경우 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묵시적으로 연장된다.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에는 9년동안 보장받으며, 차임을 제외한 다른 조건은 종전의 임대차 조건과 동일하다. 차임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권리금: 추탈보상청구권

임대인에게 갱신청구 거절의 자유가 있으므로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의 영업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퇴거임차인에게 영업재산가액을 상환해야하는 추탈보상 제도가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임차인은 갱신이 안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임대인에게 영업재산의 시장가격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추탈보상금이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갱신거절이 어려워 갱신 강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추탈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를 전제하는 거절, 즉 회복권, 건축 또는 재건축 등을 통한 회복과 주거를 위한 회복 등이 속한다.

임대료

임대료증감청구권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자유에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차임 증가율이 건축비지수 변화율을 넘지 못한다. 임대료는 계약기간 중 일정하게 유지되나, 3년마다 임대료개정청구를 할 수 있다. 특약 적용 시 종전 임료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료개정청구를 할 수 있다.

계약만료 후의 임료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현실적으로는 경쟁 임대료보다 낮게 적용되며 간접임대료는 상한이 존재한다. 이는 종전 임대차 조건과 같다면 시장가격에 의해 비교사례를 적용하여 위치, 면적, 상태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임대료 평가방법으로는 비교사례방식, 소득산출법 등이 있으나 어떤 조합이든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단체, 임차인단체로 구성되는 임대차관계 전국협의위원회(Commissions nationale de concertation)에서 매년 협의 및 조정한 적정 임료를 따르도록 한다.

2) 영국 임대차보호법

영국의 임대차법은 존속보호 및 임차료제도가 규범적으로 일치되어 있다. 임료 제한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존속보호로 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구조로, 양 제도 중 한쪽이라도 흡결이 발생하면 동시에 봉고된다. 영국에서의 부동산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는 상점공간을 일정기간 양도받는다는 개념이다. 임차인이 해당 기간의 실소유자이자 실점유자이며, 권리의무 내용이 상세히 서면으로 기록되어 계약이 성립되며, 임차권 설정 방식은 자유롭다.

상가건물임대차는 1) 임대차 관계, 2) 임차인이 점유한 경우, 3)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사업이란 "영업, 직업, 고용을 포함하여 법인이나 자연인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사업활동"을 포함한다. 주거겸용 건물의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가 적용된다.

권리금: 이익권 및 비용상환청구권, 시설물매수청구권, 보상청구권 등 기타 청구권

상점공간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다. 주거전용 건물은 권리금이 금지되나 상가건물은 특별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권리금에 대한 계약사항은 사무변호사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권리금 문제가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적다.

특정 공간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이익을 이익권이라 칭한다. 이익권은 임차권과 별개로 처분 가능하다. 5년 이상 영업한 상점의 경우 발생한 영업권이 인정되어 상환받을 수 있다. 영업권의 입증은 임차인이 담당하며, 이는 재산법(Law of Property)에서 다루고 있다. 물론 임차권과 영업권(이익권)을 한 번에 양도 처분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새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익권은 보상되지 않으나 추탈 보상은 인정된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건물 개량에 대한 비용상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임차인이 개량행위의 취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비용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엄격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임차인의 개량행위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이 성립된다.

임대차기간

임대차 종료 6~12개월 전에 목적물, 임대료, 기간을 표시한 신임대차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년을 최소단위로 하여 14년 미만의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 임대차 지속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를 갱신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1) 임차인이 임대차상에 제시된 수선의 의무 불이행, 2) 임료 지불을 지속적으로 지체, 3)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위반 및 목적물 이용·관리의 임차인 의무위반, 4) 임대인이 상응하는 대체건물 제공, 5) 전대차 부분이 존재하여 임대인이 전체 임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6) 임대인이 철거 혹은 재건축을 위해 목적건물의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경우, 7)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사업 혹은 거주를 위해 점유해야 하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5)~7)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 과세평균액(Rentable Value)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확정기간임대차는 기간만료에 의해, 주기/월불/연불임대차 등 가임지불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약고지에 의해 임대차가 종료된다. 실제로는 당사자의 해약고지 및 임차인의 임대차 청구가 대부분이다. 임대차 종료를 위해 임대인은 임대건물을 사용하거나 현 임대차조항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임대차에 대한 해약고지를 문서를 통해 할 수 있다. 1) 임차인은 2개월 이내에 점유권 포기여부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차 신청 권리가 박탈되며, 2) 임대인이 주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무효이며, 3) 임대차 종료일

자가 명기되어야 한다. 4) 기간만료 6~12개월 전에 해고통지가 가능하고, 5) 새로운 임대차 신청의 반대여부와 그 사유를 해지통고의 내용으로 법원에 명시해야 한다.

임대료

임대료는 신규임대료와 계속임대료 모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방식, 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증액 등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존속기간과 임대료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4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자유로운 임차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법원이 결정한다.

3) 독일의 상가임대차보호법

독일에서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이 아닌 토지와 일체형의 건물 임대차만을 인정한다. 거주용 임대차와 사업용 공간의 임대차로 구분되며, 사업용 공간의 임대차에 대한 법률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임대차에 새로운 편성, 간소화 및 개정에 관한 법률(약칭 임대차개정법)"에 의해 민법 중 임대차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영업용 임대차는 거주용에 적용되는 특별한 보호규정⁵²⁾이 없다. 따라서 사용임대차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이 적용되며, 계약 당사자 간 특약과 관행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다.

임대차기간

임대계약의 최단기 규정은 없으며, 존속기간은 최장 30년으로 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⁵³⁾ 계약 해지는 건물 인도 후 최소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계약기간의 $\frac{1}{4}$ 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야 해약고지를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30년이 넘는 경우에는 임대물 인도 후 30년 경과 후에 법정기간을 두어야 임대차를 특별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종신계약의 경우 해지할 수 없다. 기간만료가 되면

52) 주거용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동일규모, 종류, 설비일 때 종전 3년간의 임대료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비준임료에 제한된다. 증액 폭은 역시 종전 3년간의 임대료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53) Section 544 Lease for more than thirty years: If a lease agreement is signed for a period of more than thirty years, then each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after thirty years have passed, may after surrender of the leased property terminate the lease for cause with the statutory notice period. Termination is not permissible if the agreement has been signed for the duration of the life of the lessor or lessee(German Civil Code BGB).

임대차는 종료되나, 합의 및 묵시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연장된다. 임대차를 특별해지하는 경우는 1) 목적물이 임차인에게 적시에 허용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을 때, 2) 임차인의 부주의로 목적물이 위태롭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임대인의 권리가 침해할 때, 3) 임차인이 2기가 넘을 때 2개월 분 이상의 차임을 지체하는 등 상당금액의 임대료 지불을 자체할 때에 해당한다. 해지 사유가 임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 시정을 위해 상당기간을 유보 혹은 계고 효과가 없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임대료

신규임료·계속임료가 모두 자유이며, 주거용과 다르게 사업용공간은 임대료 증액을 목적으로 해약고지가 가능하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차인의 이윤, 매출액 등 수수료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권리금: 비용상환청구권 및 시설물매수청구권

독일 민법의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을 상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차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된다. 부착시설 및 건축물에 행한 변경은 수거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적정한 보상을 통해 이 수거권을 행사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수거 시 가치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계약서에 일정 조건에서 부속물 건축물 변경에 대한 인수 의무 및 권한을 규정하도록 권장한다. 보증금은 차임청구권, 임대공간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담보하며, 계약상 부속의무로 보증, 임대료 선불, 건축비용보조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4) 일본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치법과 차기법 제정(1921년)으로 주거시설의 임차인 보호와 합리적 이용을 꾀하고자 했다. 1991년 차지차기법으로 특별법 제정이 되었고, 주거용과 영업용의 임대차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 계약갱신 거절 및 해약 고지가 가능하다. 명도 보상에 의해 영업이익을 보상할 수 있다.

보증금과 권리금

통상적으로 보증금이 거래되며,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되어 오다가 판례를 통해 객관적인 장소적 이익에 대한 대가만을 인정하게 되었다.

임대차기간과 계약해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원인은 이행지체 및 이행 불능이며, 임차인이 반대하는 방향으로의 보존행위, 일부 임차물의 멸실, 임대인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전체 또는 일부 양도 등이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법정갱신제도가 인정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년 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한다. 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는 기간 만료 시에도 계약이 소멸되지 않으며, 임대인의 자체없는 이의가 없다면 계약은 갱신된다. 보상금 지불과 건물 명도에 따른 채무는 동시에 행되어야 한다. 정기차가권은 법정갱신이 미적용되며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임대료

임대인은 차임증액청구권을, 임차인은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대료를 증액하지 않겠다는 특약은 유효하지만 감액하지 않겠다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사정변경의 원칙으로 차임증액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장기적이며 경제적 변동이 있는 경우 증액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2_ 제2종 균린생활시설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서점(제1종 균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마. 총포판매소
- 바. 사진관, 표구점
-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자. 일반음식점
-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 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 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3_인터뷰 대상자 특성 및 인터뷰 일시

No.	인터뷰 대상	연령 (만, 세)	성 별	진입시기	관련 지역	인터뷰 일자
1	IIT업체 대표, 거주민	31	남	2014년	연남동	2015.10.15
2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주 S씨, 거주민	60대	남	2012년	연남동	2015.10.15
3	S문화사 대표 P씨, 건물주, 거주민	60대	남	30년 이상 거주	연남동	2015.10.15
4	A인테리어 대표, 건물주	40	여	2015년	연남동	2015.10.20
5	D건축사사무소 대표	44	남	2013년	연남동	2015.10.20
6	B빵집 대표, 거주민	47	남	2014년	연남동	2015.10.20
7	L커피전문점 대표	39	남	2009년	연남동	2015.10.22
8	K갤러리, S디자인카페 대표	35	남	2013년	연남동, 합정동	2015.10.22
9	연남동 30년 이상 거주민 C씨, 건물주	34	남	30년 이상 거주	연남동	2015.10.22
10	K의류점 대표	36	여	2012년	연남동	2015.10.23
11	C디저트전문점 대표	48	여	2003년	동교동, 경리단길	2015.10.28
12	T음식점, S음식점, O주점 대표	35	남	2011년	연남동, 경리단길	2015.10.28
13	L카페 대표, 거주민	60	여	2013년	연남동	2015.11.04
14	백반집 공동대표, 거주민	46	여	2011년, 30년 이상 거주	연남동	2015.11.04
15	J기사식당 대표	51	여	2002	연남동	2015.11.04
16	Y기사식당 대표, 거주민	75	남	1995	연남동	2015.11.04
17	Y기사식당 공동대표, 상인회 총무	40대	남	2000	연남동	2015.11.04
18	S미술관 큐레이터, 거주민	35	여	2013	연남동, 상수동	2015.11.09
19	S공연장 대표	50대	남	2005	동교동	2015.11.12
20	홍대 인디씬 관계자 J씨(전 음악방송 작가)	29	여		연남동	2015.11.12
21	D커피전문점, 건물주, 거주민	43	남	2008	연남동, 성산동	2015.11.12
22	S음식점 공동대표	30	남	2014	연남동	2015.11.12
23	S주점 대표	65	남	2015	연남동	2015.11.12
24	S게스트하우스 대표, 거주민	34	여	2013	서촌	2015.11.18
25	H음식점 대표, 거주민	56	여	2012	연남동	2015.11.18
26	S업체 대표, 거주민	50대	남	1985	연남동	2015.11.18
27	Y음식점 대표	47	남	2009	연남동	2015.11.18

No.	인터뷰 대상	연령 (만, 세)	성 별	진입시기	관련 지역	인터뷰 일자
28	G식당 대표, 거주민	36	남	2015	연남동	2015.11.18
29	P빵집 대표	40	남	2012	연남동	2015.11.20
30	N의류점 대표	40	여	2010	연남동	2015.11.23
31	D기사식당 대표, 건물주	65	남	1985	연남동	2015.11.23
32	H부동산 대표	45	남	2009	연남동	2015.11.23
33	D카페 대표	48	여	2014	연희동	2015.11.25
34	B대안공간 공동대표	35	남	2013	서촌	2015.12.04
35	B대안공간 대표	35	남	2013	서촌	2015.12.04
36	건물주 K씨, 거주민	41	남	2010	서촌	2015.12.05
37	C쌀집	48	남	1998	경리단길	2014.02.20
38	D노래연습장	59	남	1956	경리단길	2014.03.12
39	H화장품	48	여	2013	경리단길	2014.03
40	H가구점	33	남	1999	경리단길	2014.03
41	D정육점	36	남	2013	경리단길	2014.03.21
42	D철물점	65	남	1980	경리단길	2014.03
43	H부동산	54	남	1994	경리단길	2014.03
44	M세탁소	68	여	2002	경리단길	2014.03
45	N음식점	55	여	2000	경리단길	2014.03
46	V커피전문점	25	남	2012	경리단길	2014.03
47	M부동산	62	남	1999	경리단길	2014.03.22
48	I쌀집	51	남	2002	경리단길	2014.03
49	S디자인사무소	36	남	2011	경리단길	2014.03
50	G오토바이	61	남	1989	경리단길	2014.03.21
51	B펍	40	남	2014(0.3년)	경리단길	2014.03.21
52	서점	72	남	1974	경리단길	2014.03.21
53	I음식점	71	여	1991	경리단길	2014.03.21
54	G세탁소	53	여	1999	경리단길	2014.03.21
55	G주점	49	여	2008	경리단길	2014.03.21
56	C소품점	39	여	2014(0.3년)	경리단길	2014.03.21
57	S디저트전문점, T음식점	40대	남	2013(0.5년)	경리단길	2014.05.21
58	D카페	32	남	2014(0.1년)	경리단길	2014.07.24
59	D음식점	32	여	2011	경리단길	2014.09.26
60	M펍	32	남	2012	경리단길	2014.09
61	H디자인사무소	33	남	2015년(0.1년)	경리단길	2015.09